

2023년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10호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고개요

□ 지정목적

- 치유농업사를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 지정등급: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 지정규모: 1개소 내외

□ 지정대상 및 지정요건

- 지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치유농업법 제13조)
- 지정요건(시행령 제9조, 붙임1, 붙임2, 붙임3 참고)
 -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2급) 등 요건 충족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자체 조달 가능 여부

2

지정기관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가 신청 방법

- 공고기간: 2022. 8. 1.(월) ~ 8. 31.(수)
- 신청기간: 2022. 8. 22.(월) ~ 8. 31.(수)
- 접수방법: 공고 기간 중 공문 또는 방문
- 문의/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자원팀(064-760-7541~7542)
- 제출서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관련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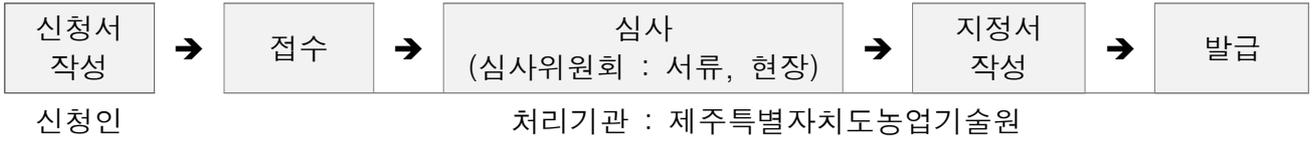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1
2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 양성과정 운영 계획(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포함) -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및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운영경비 조달계획 - 교육생 선발기준 및 학사운영 규정	서식2
3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장등록증	

나 선정·평가

- 심사기간: 2022. 9. 5.(월) ~ 9. 30.(금) (25일간 심사)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50%)와 현장실사(50%) 진행
- 심사기준: 운영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사업추진 기반 등(붙임5)
* 6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판정

- 선정: 2급 양성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선정
 - 내·외부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내부 2, 외부 4)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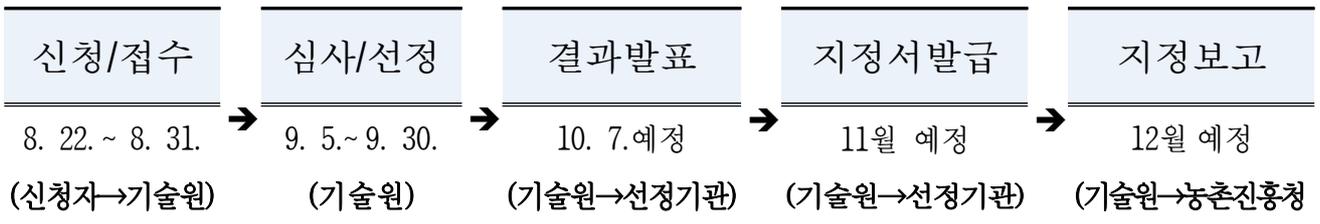


- 지정결과 발표: 2022. 10월 중
 - 심사위원회 개최 후 15일 이내 개별 통보 후 지정서 발급
 - 양성기관 공고(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2022. 11월 예정

3

추진일정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지원팀(064-760-7541~7542)

구분	지정요건
1. 시설 및 장비	<p>가. 교육시설을 교육환경 및 보건 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p> <p>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강의실 및 실습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p> <p>1) 강의실: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가능 인원이 20명 이상일 것</p> <p>2) 실습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p> <p>다.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장비를 갖출 것</p> <p>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p> <p>마. 그 밖에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p>
2. 인력	<p>가.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1) 책임교수요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p> <p>가)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다) 1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2) 교수요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p> <p>가)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이상 또는 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다)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전담 운영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p>

<p>3. 교육 과정</p>	<p>가. 교육과정은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 나. 각 교육과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목을 적절하게 구성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2)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3)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4)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5) 치유농업의 관리·운영 실무 <p>다.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p>
---------------------	---

교육분야		교육과목	교육시간		
			계	이론	실습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 서비스의 이해	1) 치유농업개론	8	8	-
		2) 치유농업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18	18	-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1)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24	12	12
		2)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18	10	8
	다.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1)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24	12	12
		2)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행	16	8	8
		3)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16	8	8
	라. 선택과목	원예학,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 보호학, 토양학, 축산학개론, 동물 생리학, 동물영양학, 동물질병학, 동물관리학, 곤충학, 농기계학, 농 작업(農作業)안전관리, 보건학개론, 보완대체의학, 예방의학, 교육학개 론, 교수설계론, 심리학개론, 직업 및 진로상담	18	18	-
	소계		142	94	48

교육분야	세부교육과목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 의 이해	치유농업개론	1. 치유농업의 이해
		2. 치유농업 법규 및 행정
		3. 치유농업 사례 및 전망
	치유농업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1. 심리적 검사 및 측정
2. 인체 생리검사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1. 치유농업 식물 활동소재
		2. 치유농업 동물 활동소재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1. 치유농업시설 조성 제도 이해
		2. 치유농업시설 환경조성
치유농업서비스 의 운영과 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1. 치유농업프로그램 요구분석
		2.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행	1. 치유농업프로그램 준비
		2. 치유농업프로그램 안내
		3. 치유농업프로그램 활동 제공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1.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목적과 내용
		2. 치유농업프로그램 평가 대상
		3. 치유농업프로그램 평가 방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내용 안내' 참고하여 작성됨(21.5.26)

※ 치유농업사 양성 세부교육과목은 농촌진흥청의 정책 및 육성방향에 따라 변경되어 추진될 수 있음.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학사관리 규정 표준안(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관 리 기 준
1. 출결 관리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 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일수는 총 출석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비대면 교육(온라인 실시간 교육)시 학습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웹캠, 마이크 등) 다.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할 수 있다.
2. 수행 평가 관리	가. 평가일시,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일 교육 시작 전에 공지한다. 나. 기수별(회차별) 교육생은 동일한 수료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 과제물, 평가 시험 등을 통하여 교육 이수 실태를 평가한다.
3. 설문 조사	매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서류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과정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전 및 목표 ② 수강생 선발 기준 및 홍보 방안 ③ 학사운영 규정의 적정성 ④ 교육생 대상 보험 가입 계획 ⑤ 교육생 관리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의실 : 연면적(바닥면적) 50㎡이상 1실 ② 실습실 : 연면적(바닥면적) 100㎡이상 ③ 교육장비 : 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④ 화장실 : 남녀구분, 인원 적절 ⑤ 급수시설 : 수질이 먹는 물 기준 적합 ⑥ 소방시설 : 소방, 경보설비 등 구비 ⑦ 기타 : 회의실 등 학습자 편의시설 ⑧ 교육시설 접근성 ⑨ 교육시설 쾌적성 ⑩ 실습을 위한 기자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②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③ 증빙자료(교안 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교수요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 교수요원 확보 인원 현황 ② 전문강사 자격기준 준수 여부 ③ 증빙자료(학력, 경력, 자격증 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생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 매뉴얼 보유 여부 ② 코로나 대응 방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의실, 실습실, 현장학습장, 화장실, 급수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등 시설장비 구비 현황 ② 증빙자료(건축물대장, 사진 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기관의 추진 의지 ②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전담조직 여부 및 인력현황 (인력의 전문성, 관련업무 추진경력 등) ④ 협력네트워크 구성 현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경비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영경비 자체 조달계획 	

※ 심사기준

1. 심사항목별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판정
2. 6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판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자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서류	포함 내용
1.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지정신청서([서식1], 시행규칙 제6조제1항)
2.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서식2]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1) 양성과정 운영 계획	○ 양성기관 운영 기본방향, 참가자 모집 및 홍보계획, 교육만족도 조사 및 환류계획 등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포함)
2)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상근 인력 및 강사 현황 ○ 교수요원의 이력서 등(본인 서명 필요, 주민등록 번호, 통장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금지)
3) 교육시설·장비의 보유 및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교육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와 용도 ※ 건축물관리대장(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규모, 소유여부 확인 서류 첨부 ※ 화장실, 급수시설, 강의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에 대한 내역 ※ 안전 매뉴얼 및 소방시설 점검 내역 보유 시 첨부 ○ 교육 장비 목록 ○ 사진 자료 포함
4) 운영경비 조달계획	○ 수입과 지출 계획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기관이름 담당자 홍길동 (0 6 1 - 0 0 0 - 0 0 0 0)

※ 본 양식은 예시이며,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작성 가능합니다.

※ 파란 색 글씨를 삭제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I 기관 일반 현황

1. 기관 일반현황

신명조 15p

○

2. 조직 및 인력

신명조 15p

○

II 양성과정 운영 계획

※ 본 양식은 예시이며,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작성 가능합니다.

1. 기본방향

양성 비전 및 목표

○

○

치유농업사 활용 전략

○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

○

2. 교육개요

교육기간 및 장소

○

○

수강생 선발인원 및 기준

○

○

3. 2023년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과정 운영 * 세부 교육 계획안 제시

일 자		강의시간	강의내용	교육강사
1주차				
2주차				

4. 교육생 관리

학사운영 규정 * 교육생 출결 및 이수 관리 방안 포함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환류 계획

Ⅲ

전문 교수요원 및 교육운영 인력 확보 현황(또는 계획)

* 양식 변경활용 가능(교수요원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동의서 첨부), 미확보 시 확보계획 작성

전문 교수요원(상시인력) * 시행령 제9조(별표3)에 해당하는 인력

구 분	소속	성명	교육과목	주요 경력	비고
책임교수요원					
전담교수요원					
전담운영인력					

강사요원(비상시인력)

연번	소속	성명	교육과목	주요 경력	비고
1					
2					
3					

* 교수 및 강사요원의 이력서(본인서명필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금지)

IV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또는 계획)

1. 교육시설 및 장비 * 양식 변경활용 가능,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시설 현황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시설별 안전위생점검표 첨부

* 화장실, 급수시설, 강의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안전 및 소방시설 내역 등

명칭	면적(m^2) 또는 규모	사용가능 인원(명)	용도	비고 (소재지)

장비 현황

구분	장비명	수량	용도
교육장비	컴퓨터	3	
	빔 프로젝터	1	
교구			

2. 교육시설 사진

건물 사진 및 시설별 내부 공간 사진을 첨부

V

운영경비 조달 계획서

1.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재원 조달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재원	소계					

2. 지출 계획 * 교육 경비 집행 체계 및 집행 계획

항목	소요액(천원)	세부산출내역(산출근거)
합계		

VI

첨부자료